

소화설비 할인 규정(4)

규정에 의해 우리 협회가 실시하고 있는 소화설비 할인검사에 합격한 소화설비는 방화정보 65호에서 표시한 바와 같이 보험가입시 보험료 할인이택이 주어진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규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소방법규와 대비·요약하여 연재한다.

소화설비 할인규정과 소방법과의 비교

구 분	소 방 법 규	소 방 설 비 규 정
스프링클러설비 ('93. 6. 1) 1. 설치대상	* 시행령 제28조 -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의 무대부가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층 : 바닥면적 합계 300m 이상 그밖의 층 : 500㎡ 이상의 무대부 - 판매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4층 이하인 건축물 : 9,000㎡. 5층 이상인 건축물 : 6,000㎡ 이상은 전층 - 11층 이상인 건축물로 여관, 호텔용도는 전층 - 아파트 16층 이상층 건물은 16층 이상 - 반자높이가 10m 넘는 락크식 창고로 연면적 2, 100㎡ 이상 - 공장 및 창고시설로 별표4의 수량 1,0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하는 것 - 지하가로서 연면적 1,000㎡ 이상(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층 : 학교용도 제외) - 상가 사항에 제외되는 11층 이상인것(11층 이상 설치 필요)	* 하나의 건물 전체를 설치 - 단,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부분과 설치하지 않은 부분은(건축법상) 방화구획 기준에 적합하게 구획한 경우 각각 화재위험을 달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설치체의 1. 물분무소화설비 등 설치 장소 2. 나트륨·칼륨·탄화칼슘·인산칼슘·과산화나트륨 제조, 저장하여 주수위험이 있는 장소.
2. 건물구조	* 제한없음	* 천장·벽 등 상시 개방 개구부는 헤드의 작동지연이 되므로 가능한한 폐쇄 * 위 사항을 조치할 수 없으면 수직벽 설치 - 반자(천장)으로부터 45cm 이상이고, 헤드하방 10cm 이상

구 분	소 방 법 규	소 방 설 비 규 정																				
3. 연소방지	* 제한없음	<p>* 스프링클러설치 부분과 인접한 내화구조 이외의 건물이 상호간 외벽 중심선에서 1층에 있어서는 3m 이하, 2층이 5m 이하인 경우는 타 건물로부터 10m 이내의 각 개구부 등에 유효한 연소방지조치</p> <p>* 스프링클러 설치부분과 수평거리 15m 이하의 위치에 20K ℓ 이상의 가연성액체(가스)제조, 저장, 취급시설이 있을 때 이 장치로부터 15m 이내 개구부를 연소방지 조치</p>																				
4. 위험등급	<table border="1" data-bbox="303 831 865 1243"> <tr> <td data-bbox="303 831 339 953">경급</td> <td data-bbox="339 831 865 953">- 10층 이하의 건물로서 헤드의 부착높이가 8m 미만</td> </tr> <tr> <td data-bbox="303 953 339 1074">중급</td> <td data-bbox="339 953 865 1074">- 락크식 창고 - 백화점, 복합건물로서 시장, 백화점, 슈퍼마켓 이외의 용도</td> </tr> <tr> <td data-bbox="303 1074 339 1121">급</td> <td data-bbox="339 1074 865 1121">- 10층 이하의 건물로서 헤드 부착높이 8m 이상.</td> </tr> <tr> <td data-bbox="303 1121 339 1206">특급</td> <td data-bbox="339 1121 865 1206">- 락크식창고(특수가연물 저장, 취급, 시장, 백화점, 슈퍼마켓.)</td> </tr> <tr> <td data-bbox="303 1206 339 1243">급</td> <td data-bbox="339 1206 865 1243">- 11층 이상의 소방대상물 및 지하가</td> </tr> </table> <p data-bbox="303 1290 865 1365">* 소방법에서는 위험등급을 경급-특급으로 분류하지 않으며 비교편의상 명칭함.(이하 동일)</p>	경급	- 10층 이하의 건물로서 헤드의 부착높이가 8m 미만	중급	- 락크식 창고 - 백화점, 복합건물로서 시장, 백화점, 슈퍼마켓 이외의 용도	급	- 10층 이하의 건물로서 헤드 부착높이 8m 이상.	특급	- 락크식창고(특수가연물 저장, 취급, 시장, 백화점, 슈퍼마켓.)	급	- 11층 이상의 소방대상물 및 지하가	<table border="1" data-bbox="873 831 1244 1450"> <tr> <td data-bbox="873 831 909 1037">경급</td> <td data-bbox="909 831 1244 1037">- 10층 이하의 건물로서 공연장, 경기장, 집회장, 유기장, 여관, 기숙사, 복지시설, 유치원, 교회, 학교, 공동주택, 학예전시장, 방송시설, 사업장</td> </tr> <tr> <td data-bbox="873 1037 909 1159">중급</td> <td data-bbox="909 1037 1244 1159">- 10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의료원, 호텔, 음식점, 주차장.</td> </tr> <tr> <td data-bbox="873 1159 909 1206">급</td> <td data-bbox="909 1159 1244 1206">- 경급 용도중 헤드의 부착높이가 8m 이상인 부분의 것.</td> </tr> <tr> <td data-bbox="873 1206 909 1328">특급</td> <td data-bbox="909 1206 1244 1328">- 11층 이상인 건축물 - 지하가, 시장, 백화점, 락크식 창고, 공장용도</td> </tr> <tr> <td data-bbox="873 1328 909 1450">급</td> <td data-bbox="909 1328 1244 1450">- 화재위험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것</td> </tr> </table>	경급	- 10층 이하의 건물로서 공연장, 경기장, 집회장, 유기장, 여관, 기숙사, 복지시설, 유치원, 교회, 학교, 공동주택, 학예전시장, 방송시설, 사업장	중급	- 10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의료원, 호텔, 음식점, 주차장.	급	- 경급 용도중 헤드의 부착높이가 8m 이상인 부분의 것.	특급	- 11층 이상인 건축물 - 지하가, 시장, 백화점, 락크식 창고, 공장용도	급	- 화재위험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것
경급	- 10층 이하의 건물로서 헤드의 부착높이가 8m 미만																					
중급	- 락크식 창고 - 백화점, 복합건물로서 시장, 백화점, 슈퍼마켓 이외의 용도																					
급	- 10층 이하의 건물로서 헤드 부착높이 8m 이상.																					
특급	- 락크식창고(특수가연물 저장, 취급, 시장, 백화점, 슈퍼마켓.)																					
급	- 11층 이상의 소방대상물 및 지하가																					
경급	- 10층 이하의 건물로서 공연장, 경기장, 집회장, 유기장, 여관, 기숙사, 복지시설, 유치원, 교회, 학교, 공동주택, 학예전시장, 방송시설, 사업장																					
중급	- 10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의료원, 호텔, 음식점, 주차장.																					
급	- 경급 용도중 헤드의 부착높이가 8m 이상인 부분의 것.																					
특급	- 11층 이상인 건축물 - 지하가, 시장, 백화점, 락크식 창고, 공장용도																					
급	- 화재위험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것																					
5. 급수원	<p>* 폐쇄형헤드 사용시</p> <p>경급-10개 × (80 ℓ × 20분) = 16 m³</p> <p>중급-20개 × (80 ℓ × 20분) = 30 m³</p> <p>특급-30개 × (80 ℓ × 20분) = 48 m³</p>	* 2개 이상의 독립된 수원으로 1차수원 및 1차수원의 50% 이상을 확보한 2차수원																				

(계속)

[풍수재(홍수) 체크리스트]

한국화재보험협회

조 치 항 목	조치여부
1. 각 공정을 안전하게 정지시키고, 물이 들어갈 우려가 있는 위험물탱크는 넘침방지를 위하여 비워 둘 것	<input type="checkbox"/>
2. 건축중인 구조물은 버팀목을 세워 지지할 것	<input type="checkbox"/>
3. 중요 서류는 사본을 만들어 안전한 장소에 보관할 것	<input type="checkbox"/>
4. 트레일러, 목재 등 옥외에 방지된 물품들은 떠내려 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고, 홍수에 의하여 부유하는 물건들로부터 옥외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래주머니를 이용한 바리케이트를 설치할 것	<input type="checkbox"/>
5. 다음의 물품을 준비하여 방재실 등에 비치할 것 -이동용 펌프와 호스 -비상조명등 -판자와 못 -모래주머니 -자루걸레 -방수복 -전동 및 수동 공구 -삽과 도끼	<input type="checkbox"/>
6. 비상대기조를 위한 물품을 준비해 둘 것 -부패하지 않는 비상식량 -구급약품 및 음료수 -무전기 -손전등	<input type="checkbox"/>
7. 비상발전기의 연료를 채워둘 것	<input type="checkbox"/>
8. 모든 소화설비가 정상 작동되도록 정비할 것	<input type="checkbox"/>
9. 이동용 크레인 또는 브리지의 제동장치를 점검하고, 제조자의 지시대로 고정할 것	<input type="checkbox"/>
10. 취약한 건물의 개구부나 옥외의 중요 장비 주위에 모래주머니를 비치하고, 문지방, 출입구, 건물기초 부분 등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물의 흐름을 바꿀 것	<input type="checkbox"/>
11. 중요한 기계와 상품, 서류 등은 과거의 홍수경험을 살려 보다 높은 곳으로 이동시킬 것. 만약 중요장비를 이동할 수 없다면 부식 등의 우려가 있는 금속의 표면에 그리스를 칠할 것	<input type="checkbox"/>
12. 배관의 파손에 의한 누출방지를 위하여 모든 위험물 또는 가연성가스 라인의 공급원을 차단할 것	<input type="checkbox"/>
13. 지상 또는 지하탱크가 물에 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히 고정하여 둘 것 빈 탱크는 물 등으로 채우고, 사용중인 탱크의 배기구에는 예상 최대수위 보다 높게할 것	<input type="checkbox"/>
14. 위험물 이동용기는 확실히 고정할 것	<input type="checkbox"/>
15. 주건물과 떨어진 건물에 홍수 피해가 임박했을 때 주건물에서 주변건물의 전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할 것	<input type="checkbox"/>

* 이 체크리스트는 IRI(Industrial Risk Insurers)가 발행하는 "The Sentinel"(1993)에서 발췌한 것입니다.